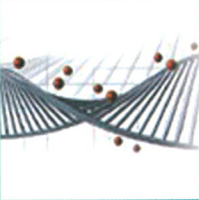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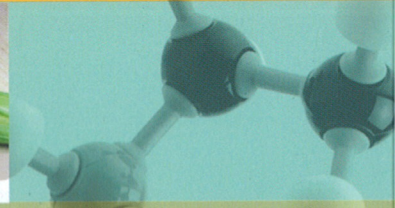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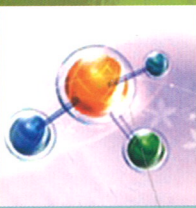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371-14

「GMO 안전관리」 갈등대응 매뉴얼



2009. 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254



농림수산식품부

「GMO 안전관리」

갈등대응 매뉴얼

2009. 12

GMO 안전관리 갈등대응 매뉴얼(요약)

□ 목 적

-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대되어 농림수산업용 GMO에 대한 수입반대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갈등 형태

-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대로 안전성 평가 강화 등 GMO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
- GMO에 대한 수입반대 시위 및 수입업체(사료생산업체)와 소비자단체(환경단체)간 충돌 등 갈등 발생

□ 갈등 경보

수 준	판 단 기 준	대 응수 위
관심 (Blue)	□ GMO 안전관리 갈등징후 감지 ▪(언론) 비판보도>긍정보도 ▪(인터넷) 비판보도>긍정보도 ▪(시민단체) 비판적 성명 발표 ▪(정치권) 비판적 성명 발표	표시검역과 중심
주의 (Yellow)	□ GMO 안전관리 갈등 가시화 ▪(언론) 고발프로그램 등장 ▪(인터넷) 토론/서명코너 등장 ▪(시민단체) 타 단체와 연대 ▪(정치권) 각종 요구자료 증가	소비안전정책관 중심
경계 (Orange)	□ GMO 안전관리 갈등 확산 ▪(언론) 비판적 토론회 진행 ▪(인터넷) 사이버폴 진행 ▪(시민단체) 시위/서명 시작 ▪(정치권) 비판세력 결집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심각 (Red)	□ GMO 안전관리 갈등 장기화 ▪(언론) 비판 기사·보도 만연 ▪(인터넷) 전 매체로 확산 ▪(시민단체) 전 단체로 확산 ▪(정치권) 청문회·국정조사 요구	관련부처 공동

□ 갈등대응 지침

○ 관심(Blue)

- 관련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 비판 보도·발표 단체·기관 등에 GMO 안전관리 자료 제공
-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력 제고 및 합의 도출

○ 주의(Yellow)

- 비판보도 언론에 대한 해명, 반론기사 게재
- GMO 안전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GMO 안전관리 점검 실시
-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계부처 공동 언론 홍보
- 민간단체, 관계기관 공동으로 GMO 환경방출 합동조사

○ 경계(Orange)

- GMO 수입반대 단체(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와 GMO 수입업체간 중재 추진
- 관계부처 협의체('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를 활용, 대응방안 강구
- 주요 언론매체(TV, 일간지 등)를 활용한 GMO 안전관리 홍보

○ 심각(Red)

- GMO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 비판·반대 여론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및 총리실 주관 대응

□ 갈등단계별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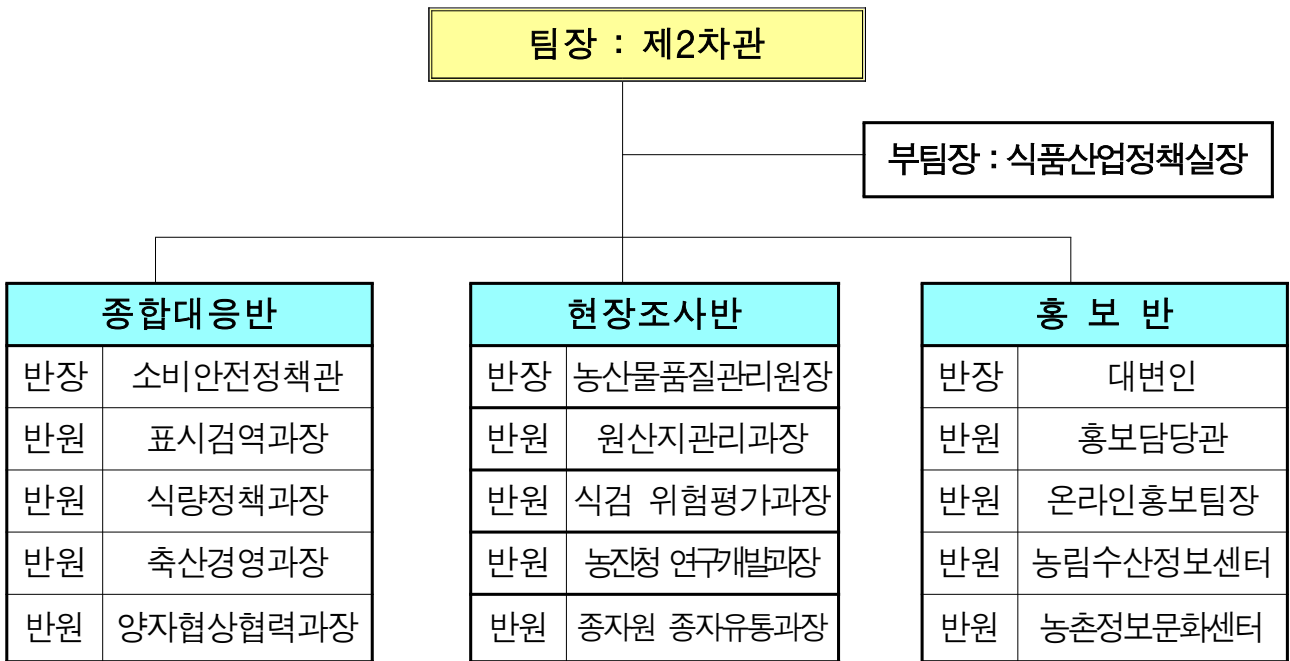
○ 「관심」 「주의」 단계 : 평상시 업무 수행수준 대응

- 팀 장 : 소비안전정책관
- 추 진 : 표시검역과 (협조 : 홍보담당관)
- 대응수준 : 표시검역과(소비안전정책관)에서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응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 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용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상황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

○ 「경계」 「심각」 단계 : GMO 안전관리 T/F 운영

-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GMO 안전관리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해소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
 - 운영기간 : 「경계」 이상 단계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 조직구성
 - T/F의 팀장은 제2차관, 부팀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 실무 반장은 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세부 운영팀 구성·운영

- T/F 구성도



- 각 실무반별 역할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팀장	- 갈등 조정 및 대응 총괄	제2차관
부팀장	- 팀장 보좌 및 업무조정	식품산업정책실장
종합대응반	- 갈등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보고 - 대외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GMO 안전관리 대책본부 운영 - 이해당사자 중재·조정	소비안전정책관
현장조사반	- GMO 안전관리 상황실 운영 - GMO 환경방출 합동조사반 운영 - 관계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조사 - GMO 안전관리 소속기관협의체 운영 - GMO 안전성 및 안전관리체계 정비	농산물품질관리원장
홍보반	-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GMO 안전관리상황 등 정부활동 브리핑	대변인

목 차

제1장 개 요	1
제1절 목 적	3
제2절 법적 근거	3
제3절 적용 범위	3
제4절 용어의 정의	4
제5절 예상되는 갈등형태	4
제6절 갈등경보	5
제7절 갈등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9
제8절 갈등관리 업무수행 체계	11
제2장 갈등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9
제1절 관심	21
1. 상 황	21
2. 조치할 사항	21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21
제2절 주의	22
1. 상 황	22
2. 조치할 사항	22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22

제3절 경계	23
1. 상 황	23
2. 조치할 사항	23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23
제4절 심각	24
1. 상 황	24
2. 조치할 사항	24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25
제3장 갈등대응 조치 및 절차	27
제1절 GMO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의한 갈등 발생 ..	29
1. 상 황	29
2. 조치할 사항	30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30
제2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31
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31
2. 언론 홍보	32
3. 언론 브리핑	33
부 록	37
1. GMO 관련 관계기관 연락처	39
2. GMO 관련 전문가 연락처	40

3. GMO 안전관리 관련 부처별 기본역할	42
4. 초기 상황보고 서식	43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보고서	44
6. 갈등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45
7. 상황보고서	46
8.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47
9.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48
10.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49
11. GMO 표시 관련 법령	51



제1장 개 요

제1절 목적

「GMO 안전관리 갈등대응 매뉴얼」은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대되어 농림수산업용 GMO에 대한 수입반대 시위 및 수입업자와 소비자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GMO 안전관리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제2절 법적근거

1. 갈등관리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92호)

2. GMO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2007-80호)
-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08호)

제3절 적용범위

- 농림수산업용 GMO의 수입·생산·보관·유통 등에 있어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대규모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시 적용
- GMO 안전업무와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속기관(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의 갈등대응 활동에 적용

제4절 용어의 정의

- 1 “잠재적 위해성”이라 함은 현재까지 인체 및 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에 유해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한다.
- 2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생물의 유용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든 생물체를 말한다.
- 3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GMO 중 생식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4 “환경방출”이라 함은 LMO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5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제5절 예상되는 갈등형태

1. GMO의 안전성(인체 유해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대로 인한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안전관리 강화 요구
2. GMO의 안전성(인체 유해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확대로 인한 모든 GMO에 대한 수입반대 시위
3.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및 사료생산업체, 이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와 소비자단체·환경단체간 갈등 심화 및 충돌

제6절 갈등경보

1. 갈등경보 수준

수 준	관 단 기 준	대응수위
관심 (Blue)	<input type="checkbox"/> GMO 안전관리 갈등징후 감지 ▪(언론) 비판보도>공정보도 ▪(인터넷) 비판보도>공정보도 ▪(시민단체) 비판적 성명 발표 ▪(정치권) 비판적 성명 발표	표시검역과 중심
주의 (Yellow)	<input type="checkbox"/> GMO 안전관리 갈등 가시화 ▪(언론) 고발프로그램 등장 ▪(인터넷) 토론/서명코너 등장 ▪(시민단체) 타 단체와 연대 ▪(정치권) 각종 요구자료 증가	소비안전정책관 중심
경계 (Orange)	<input type="checkbox"/> GMO 안전관리 갈등 확산 ▪(언론) 비판적 토론회 진행 ▪(인터넷) 사이버폴 진행 ▪(시민단체) 시위/서명 시작 ▪(정치권) 비판세력 결집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심각 (Red)	<input type="checkbox"/> GMO 안전관리 갈등 장기화 ▪(언론) 비판 기사·보도 만연 ▪(인터넷) 전 매체로 확산 ▪(시민단체) 전 단체로 확산 ▪(정치권) 청문회·국정조사 요구	관련부처 공동

2. 갈등경보 절차

갈등경보 의사결정

- 갈등경보 발령을 위한 각종 정보 취합
- 최종 의사결정 (발령권자)

< 갈등경보 발령권자 >

구 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발령권자	소관 차관	장관	장관	장관
갈등관리자	국장	소관 차관	장관	장관

갈등경보 발령 단계

- 1단계 : 갈등징후 포착 또는 발생 예상시 갈등경보 준비
- 2단계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갈등경보 발령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갈등수준 평가, 보고
- 3단계 : 발령권자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발령여부 결정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로 통보
- 4단계 : 갈등경보 발령 및 주관·관련 부서 통보(기획재정담당관실)

가. 표시검역과, 기획재정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은 GMO 안전관리와 관련된 갈등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협 또는 갈등의 수준을 평가

- 개최시기 : 갈등 징후 포착 또는 발생 예상시
-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집된 갈등징후 등에 대한 정보를 우선보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령권자에게 보고

나. 갈등수준 평가시 상황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확한 상황 진단을 위해 관련 부서는 정보를 제공

- 국회 등 정치권 동향 : 기획재정담당관실
- 언론, 인터넷 동향 : 홍보담당관실(농림수산정보센터)
-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동향 : 표시검역과
- 사료업계 동향 : 축산경영팀

다. 발령권자는 갈등평가 결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갈등수준에 맞는 정보 발령을 지시

라.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실)은 공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하여 “GMO 농수산물 안전관리” 과제에 대하여 갈등정보를 발령하고, 공문·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지

마. 갈등정보 수준을 수정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갈등진행상황에 따라 국장회의, 확대간부회의,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관계 대책회의 등을 소집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가. 필요성

- 정부의 사회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갈등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필요
-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소관 업무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갈등 해결 추진
 -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실(사회위협·갈등관리실)과 유기적으로 협조, 조기에 해결 추진

나.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구성 및 운영방안

○ 위원회 구성(갈등관리규정 §12)

-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민간위원(6명) : 갈등관리, 농학, 수산학, 식품학, 농업인단체, 어업인단체 전문가 또는 대표 각 1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은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추천, 농정자문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후보자 중 적임자를 위촉

* 정부위원(5명) :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관, 농업정책국장, 수산정책관

○ 기능 및 역할(갈등관리규정 §13)

- 농림수산식품분야 갈등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 갈등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운영방안

- 1급회의, 국장회의 등에서 갈등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해결사항 심의
-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갈등현안 발생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1. 대응개념

가. 목표

- GMO 안전성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GMO의 유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 국내 수입·생산되는 GMO의 안전성 확보

나. 대응방향

- GMO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 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체계 강화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구성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홍보 추진
- GM식품 안전성 관련 적극적인 Risk Communication 방안 수립
 - 농림수산업용 GMO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안 수립
-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GMO 안전성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 관련법령 개정 추진
- GMO 안전관리를 위해 GMO 수입업체 및 GMO 이용자(축산농가) 등에 대한 GMO 안전관리 규정 준수 교육·홍보 확대

2. 갈등경보 수준별 대응지침

가. 관심(Blue)

- 관련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 비판 보도·발표 단체·기관 등에 GMO 안전관리 자료 제공
-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력 제고 및 합의 도출

나. 주의(Yellow)

- 비판보도 언론에 대한 해명, 반론기사 게재
- GMO 안전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GMO 안전관리 점검 실시
-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계부처 공동 언론 홍보
- 민간단체(GMO 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GMO 환경방출 합동조사

다. 경계(Orange)

- GMO 수입반대 단체(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와 GMO 수입업체간 중재 추진
- 관계부처 협의체('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를 활용, 대응방안 강구
- 주요 언론매체(TV, 일간지 등)를 활용한 GMO 안전관리 홍보

라. 심각(Red)

- GMO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
- 비판·반대 여론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및 총리실 주관 대응
- 농림수산업용 GMO 전담기관 상시 연락망 구축·운영

3. 판단/고려 요소

가. 언론 보도경향

- 방송사의 뉴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 추이, 신문사의 기사, 칼럼, 사설의 논조와 부정적인 보도비율 등을 감안

나. 인터넷 여론 흐름

- 포털 뉴스·토론방·블로그의 확산도, 네티즌의 관심도(댓글) 등을 감안

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활동

-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발표한 성명서, 기자회견, 연대 및 집단행동 움직임 등을 감안

라. 정치권 동향

- 각 정당의 성명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자료요구 목적 및 건수, 비판적 연대 움직임, 청문회·국정조사 가능성 등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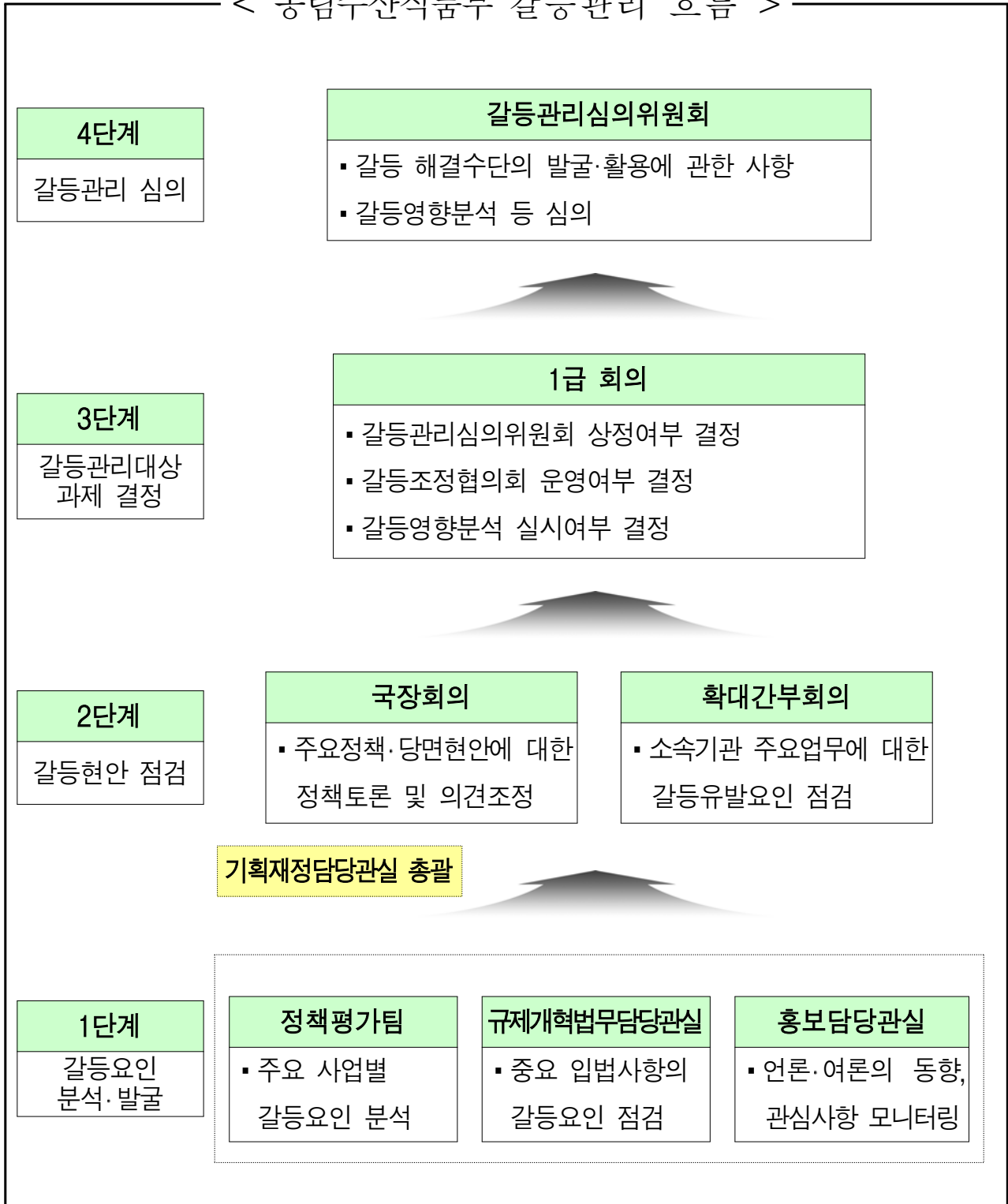
제8절 갈등관리 업무수행 체계

1. 갈등관리 분석·점검 체계

- 갈등 유발요인을 사전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 갈등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전담부서를 지정·운영
 - 발굴된 갈등과제는 국장회의, 1급 회의를 통하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소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결정
-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갈등영향분석 실시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정책은 이해관계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갈등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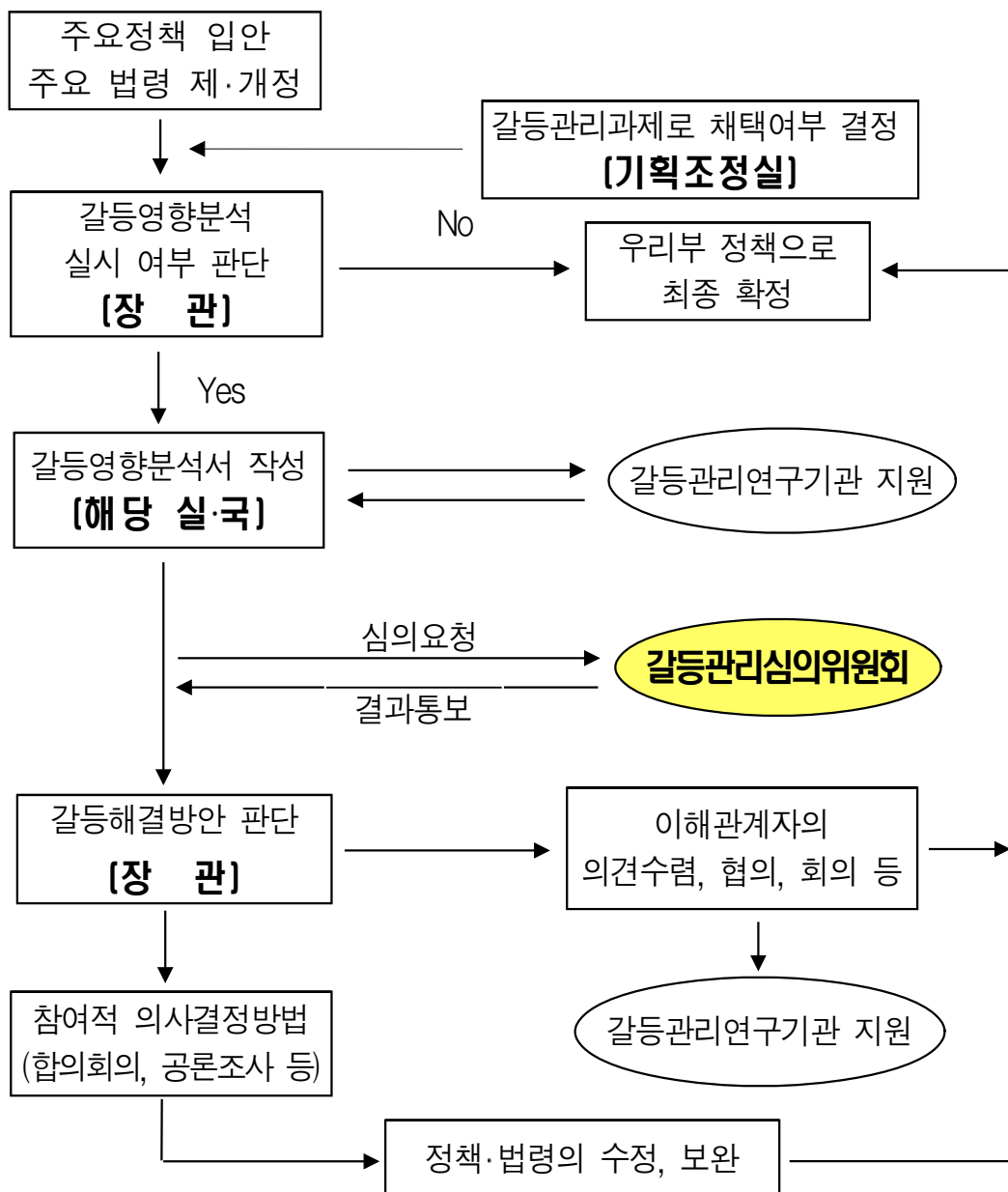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식품부 갈등관리 흐름 >



2. 갈등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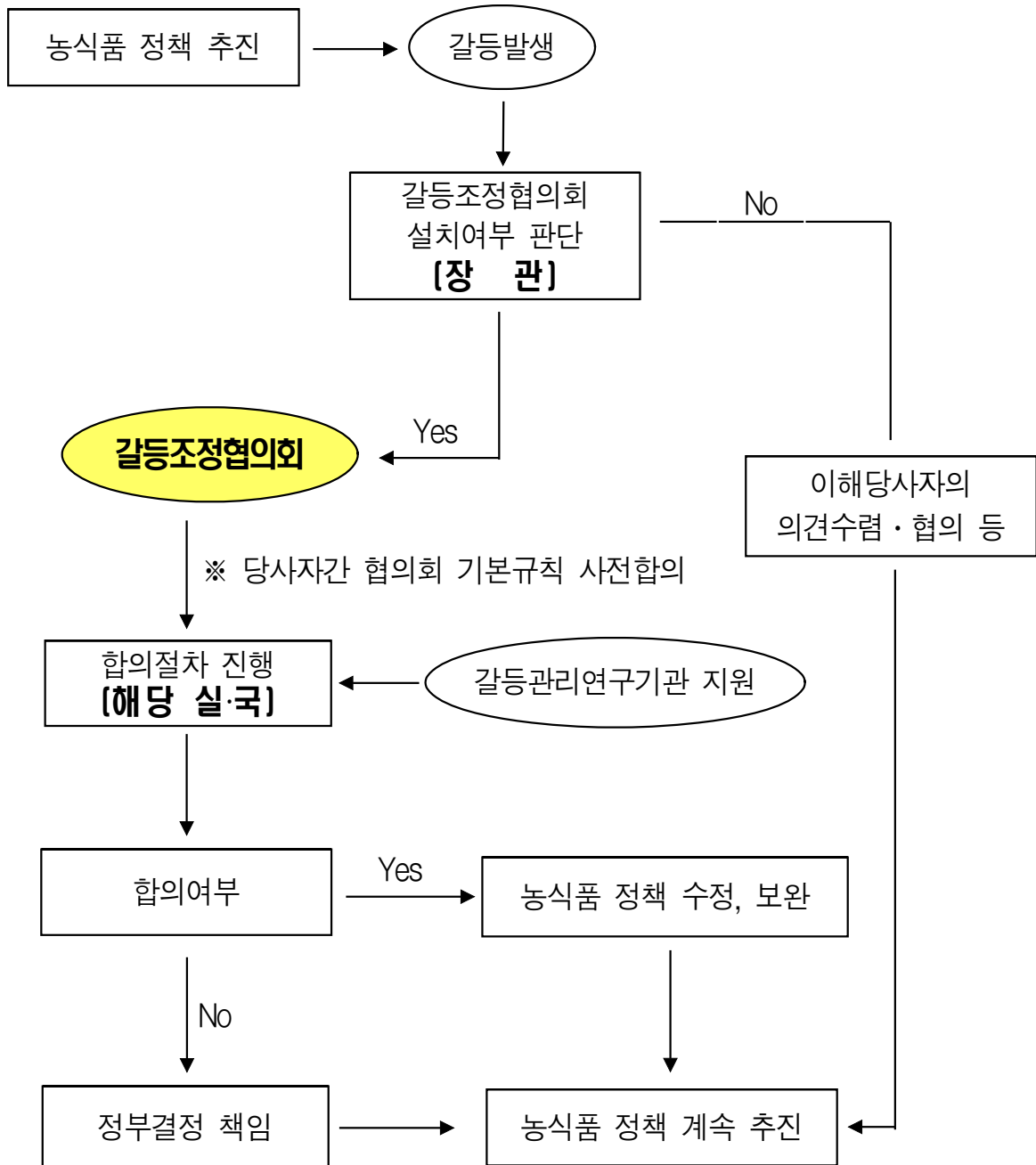
가. 사전예방(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용)

- ◆ 갈등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i)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ii)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 iii)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을 활용



다. 사후해결(갈등조정협의회 활용)

◆ 발생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신뢰를 통해 갈등을 해결



3. 단계별 조치사항

가. 「관심」 「주의」 단계 : 평상시 업무 수행수준 대응

- 팀 장 : 소비안전정책관
- 추 진 : 표시검역과 (협조 : 홍보담당관)
- 대응수준 : 표시검역과(소비안전정책관)에서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응
 - 관심단계 등에서 상황변화가 없고, 관련규정에 의한 대응처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운영함
- 근무요령, 인원구성은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하되 상황보고, 대응시기 등은 적절하게 운영

나. 「경계」 「심각」 단계 : GMO 안전관리 T/F 구성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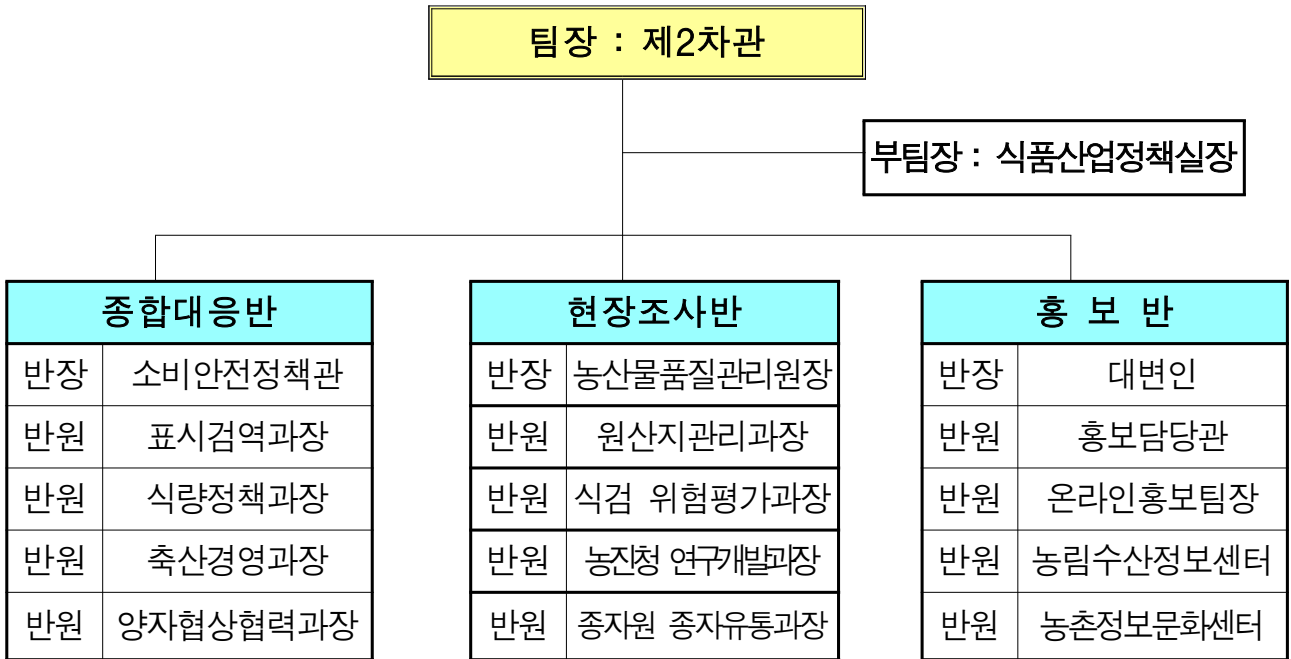
(1) 목적 및 운영기간

- 목적 : GMO 안전관리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해소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
- 운영기간 : 「경계」 이상 단계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2) 조직구성

- T/F의 팀장은 제2차관, 부팀장은 식품산업정책실장, 실무반장은 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
-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 · 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세부 운영팀을 구성, 운영

(3) T/F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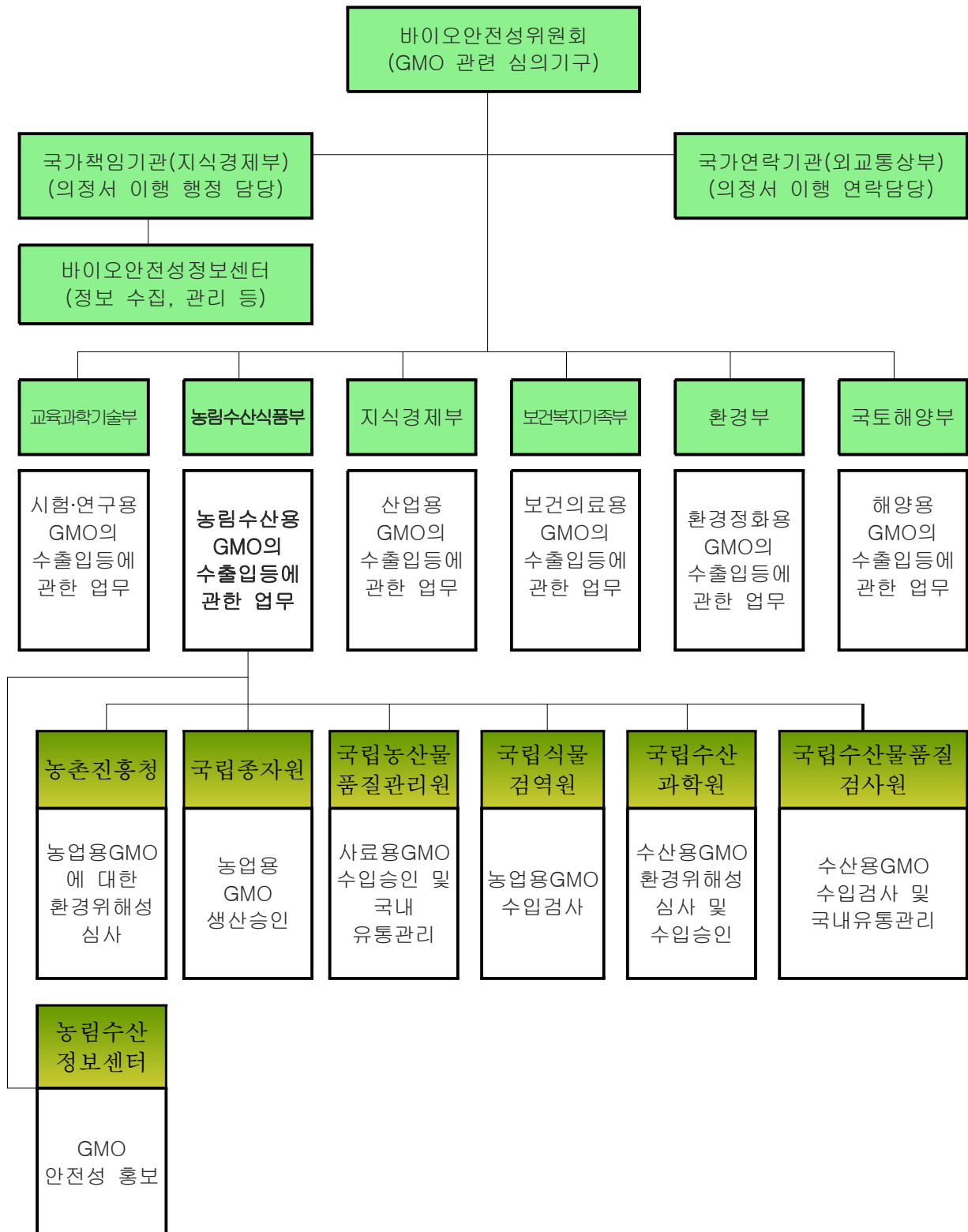


(4) 각 실무반별 역할

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팀장	- 갈등 조정 및 대응 총괄	제2차관
부팀장	- 팀장 보좌 및 업무조정	식품산업정책실장
종합대응반	- 갈등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보고 - 대외기관 협조 및 지원·연락체계 유지 - GMO 안전관리 대책본부 운영 - 이해당사자 중재·조정	소비안전정책관
현장조사반	- GMO 안전관리 상황실 운영 - GMO 환경방출 합동조사반 운영 - 관계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조사 - GMO 안전관리 소속기관협의체 운영 - GMO 안전성 및 안전관리체계 정비	농산물품질관리원장
홍보반	-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GMO 안전관리상황 등 정부활동 브리핑	대변인

4. 기관간 연락체계 및 역할

가. 체계도



나. 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	농촌진흥청	○ 농업용 GMO 안전성 평가 ○ 농업용 GMO 환경영향 모니터링 ○ 농업용 GMO 개발기관 관리
	수산과학원	○ 수산용 GMO 안전성 평가 ○ 수산용 GMO 환경영향 모니터링 ○ 수산용 GMO 수입승인 및 개발기관 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용 GMO 수입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 ○ 농업용 GMO 환경방출 합동조사
	식물검역원	○ 농업용 GMO 수입검사
	국립종자원	○ 농업용 GMO 생산승인
	수산물품질검사원	○ 수산용 GMO 수입검사 및 국내 유통관리
관련부처	국무총리실	○ GMO 안전관리 업무 조정·총괄 ○ ‘바이오안전성위원회’(GMO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 시험·연구용 GMO 개발기관 관리 ○ 시험·연구용 GMO 수입승인
	지식경제부	○ 산업용 GMO 안전관리 ○ GMO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의료용(식용 등) GMO 안전관리
	환경부	○ 환경정화용 GMO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용 GMO 안전관리 ○ GMO 안전성(인체위해성) 확보방안 수립 ○ GMO 표시제 개정방안 수립
	국토해양부	○ 해양용 GMO 안전관리
유관단체	농림수산정보센터	○ 인터넷, 언론매체 등 여론 동향 파악 ○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제2장 갈등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Blue)

1. 상 황

- ◆ 언론·인터넷 등에서 GMO 안전관리에 대한 긍정정보보다 비판보도가 많아지고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성명이 발표되는 상황

2. 조치할 사항

가. 관련 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 GMO 안전성평가·심사, 수입승인 및 통관·검역정보 공유
- 관계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점검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농림수산물부(표시검역과)

- 관련 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 농림수산업용 GMO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추진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간담회 개최 등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나. 소속기관(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원 등)

- GMO 안전성평가, 승인 및 수입검사 등 관련정보 수집·전파
- GMO 개발·생산·수입 관리 실태조사

다. 유관기관(농림수산물정보센터)

- 농식품안전정보 'Foodsafety' 활용, GMO 안전관리 홍보
- GMO 안전성에 대한 국민 여론, 동향 파악

제2절 주의(Yellow)

1. 상 황

- ◆ GMO 안전성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이 등장하고, 환경단체 등의 GMO 안전성 우려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는 상황

2. 조치할 사항

가. GMO 환경방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강화

- GMO 수입업체 및 운반경로 주변에 대한 환경방출 실태조사 실시

나. GMO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GMO 수입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이해관계자(환경단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홍보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한 정보 및 의견교환 추진

다. GMO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비판·반대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GMO 안전성 정보 및 해명·반박자료 배포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농림수산물부(소비안전정책관)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한 정보 및 의견교환 추진
- GMO 안전성 정보 및 해명·반박자료 배포
- GMO 안전관리 대책회의 소집(정책관 주재, 표시검역과, 홍보담당관,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나. 소속기관(농관원, 식검, 종자원, 농진청, 수산과학원, 수검원)

- GMO 수입업체 및 운반경로 주변에 대한 환경방출 실태조사 실시
- GMO 수입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홍보

제3절 경계(Orange)

1. 상 황

- ◆ 언론에서 비판적인 토론회가 진행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GMO 수입에 대해 산발적인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2. 조치할 사항

- 가. 관련부처 협의체(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성, 부처 공동대응 추진
 - 언론반응에 대한 농식품부 대응에서 관련부처 공동 대응으로 전환하고, 관계부처 협의기구인 '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 언론매체(TV, 일간지 등)를 활용한 GMO 안전관리체계 홍보
- 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 소비자단체와 GMO 수입업체간 GMO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한 중재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 가. 종합대응반
 - 소비자단체와 GMO 수입업체간 갈등 중재·조정
 - 관련부처와 협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방안 추진
 - GMO 안전관리 대책본부 구성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나. 현장조사반
 - GMO 안전관리 및 환경방출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 및 조사 추진
 - GMO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다. 홍보반

- 주요 상황변화에 대해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 GMO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라. 관련 부처·기관 임무 및 역할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성 및 안전 상징 추진
- GMO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전관리체계구축방안 검토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GMO 표시제 개선방안 검토, GMO 안전성(인체위해성) 확보 및 대국민 홍보방안 검토

제4절 심각(Red)

1. 상 황

- ◆ GMO 수입에 반대하고 GMO 표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와의 GMO 수입업체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

2. 조치할 사항

가. 바이오안전성정보상황실 운영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내에 GMO 안전관리상황실 설치·운영
- GMO 안전관리 전담기관간 상시 연락망 구축
- GMO 안전관리 비판·반대 언론보도 등에 대한 관련부처 공동대응

나. 의견조정 및 사회적합의 도출

- GMO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합의 도출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종합대응반

- GMO 안전관리 상황실 운영
- 대외 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 유지
- GMO 안전관리 공청회 개최

나. 현장조사반

- GMO 유통·관리업체 특별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 실시
- GMO 검정방법 개선,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
- GMO 안전관리 전담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개편

다. 언론홍보반

-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
- GMO 안전관리상황 등 정부활동 브리핑

라. 관련 부처·기관 임무 및 역할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 GMO 관리체계 일원화 및 GMO 관리기관 확대 추진
- GMO 수입대체 방안 강구
- 국제기구와 연계, GMO 안전성평가 국제기준 마련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GMO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GMO 표시제 강화



제3장 갈등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에 의한 갈등 발생

1. 상 황

□ 개요

가공용·사료용으로 수입된 GMO가 대규모로 자연환경에 방출되어 자생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GMO 안전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음

□ 피해내용

GMO가 대규모로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에게 불안을 야기시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감소시켜 농가의 피해 우려

□ 언론보도 내용

GM작물이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 작물을 오염시켜 생태계 교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일반농산물에도 섞여 소비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됨. 따라서 정부가 G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함

2. 조치할 사항

- GMO 비의도적 환경방출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강화
- GMO 수입업체 및 운반경로 주변에 대한 환경방출 실태조사 실시
- GMO 수입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이해관계자(환경단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홍보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및 이견교환 추진
- GMO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비판·반대 언론에 대한 대응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내에 GMO 갈등대응상황실 설치·운영
- GMO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3. 부서(기관)별 임무 및 역할

가. 농림수산물부(표시검역과)

- 관련정보 수집·전파 및 대응태세 점검
- 농림수산물용 GMO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정비 검토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간담회 개최 등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나. 소속기관(농진청, 농관원, 식검 등)

- GMO 개발·생산·수입관리 실태조사
- GMO 안전성 평가, 승인 및 검사 등 관련정보 수집·전파

다. 종합대응반

- 소비자단체와 GMO 수입업체간 갈등 중재·조정
- 관련부처와 협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공동 대응방안 추진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상황실' 운영
- GMO 안전관리 대책본부 구성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라. 현장조사반

- GMO 안전관리 및 환경방출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 및 조사 추진
- GMO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마. 홍보반

- 주요 상황변화에 대해 언론기관 및 관련기관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 GMO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바. 관련 부처·기관 임무 및 역할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구성 및 안전 상징 추진
 - GMO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GMO 표시제 개선방안 검토, GMO 안전성(인체 유해성) 확보 및 대국민 홍보방안 검토

제2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조사
 -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동향분석반’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검색하여 오보여부를 분석
 - 오보로 판정된 경우 일단 “해명자료·설명자료” 등을 신속 배포하여 여타 언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금번 G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해와 인식의 부족, 오해나 루머 등을 파악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결과 활용
 - '대응 전략반'은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포지셔닝 전략, 메시지 전략을 수립
 - 갈등대응 홍보 담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단계별 언론대응 방안을 수립
 -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에 따라 결과를 요약

2 언론 홍보

- 중앙, 지방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 사건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
 - 사건개요, 사건방지전략, 사건방지성과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 계획 등
 - 영상자료 포함 제공
 - 조사 진행상황 및 명확한 결과도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발표
- 사건처리 브리핑 및 취재편의 제공
 - 정기적으로 브리핑 실시
 -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
- 홈페이지, 정책포럼 등 조치사항 수시 게재
-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설치
 -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언론취재지원 센터 설치
 -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와 기자재 확보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운영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는 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언론취재지원 및 본부의 대언론 방침을 수시로 교환

- 사건현장에 출입하는 언론인 가이드 및 언론 취재현황 관리
- 출입 기자단에게 제도개선 계획, 영상자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편의 제공
- 브리핑시 사전 준비사항(언론취재지원센터)
 - 컴퓨터 설치 및 주변기기 준비
 - 전화 및 팩스를 설치
 - 언론기관 출입기자 명단 및 연락처 준비
- 주기적 상황보고
 - 07:00 : 야간 진행상황, 금일계획
 - 12:00 : 주간 진행상황
 - 16:00 : 오후 진행상황
 - 20:00 : 일일 조치사항 종합실적 및 명일계획
 - 수시 : 방제대책회의, VIP 방문, 상황 돌변 등 긴급 상황 시

3 언론 브리핑

- 정보제공 채널의 일원화
 - 정부의 공식입장은 언론홍보업무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대변인을 통하여만 제공되어야 함
 - ※ 단,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가능
 - 대변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변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언론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유해성 등)
- 정책홍보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GMO 안전관리 T/F와 부처내 정책부서간 정책홍보 내부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정책발표방향에 대한 협의 시행
 - 대국민 정책발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설명자료 작성

- 브리핑 시작전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확인 및 점검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 (1) 책임이 있다면 우선 사과를, 그렇지 않다면 유감이라도 표명
- (2) 추후 법률적 배상책임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초기에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사죄하되 법적 책임이 있는 문구사용 엄금
- (3) 원인을 밝히거나, 조속히 원인규명에 임할 것을 강조
- (4)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의 공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천명
- (5) 사고로 인한 복구와 배상을 약속

- 브리핑 자료는 '사건 설명자료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 보도자료, 사건설명자료, 언론대응지침은 법률지원팀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수행

<사건 설명자료 작성원칙>

- (1) 사실, 조치사항, 간단한 배경과 상황설명 등 3가지 문단으로 작성
- (2)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을 기술
- (3) 감성적인 언어사용 금지
- (4) 추가질문에 즉각 답변 금지
- (5)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의도가 없는 한 입장 표명 금지
- (6) 사후 책임질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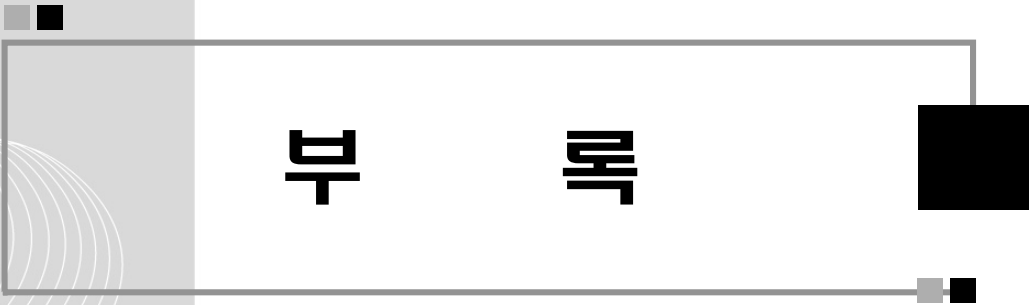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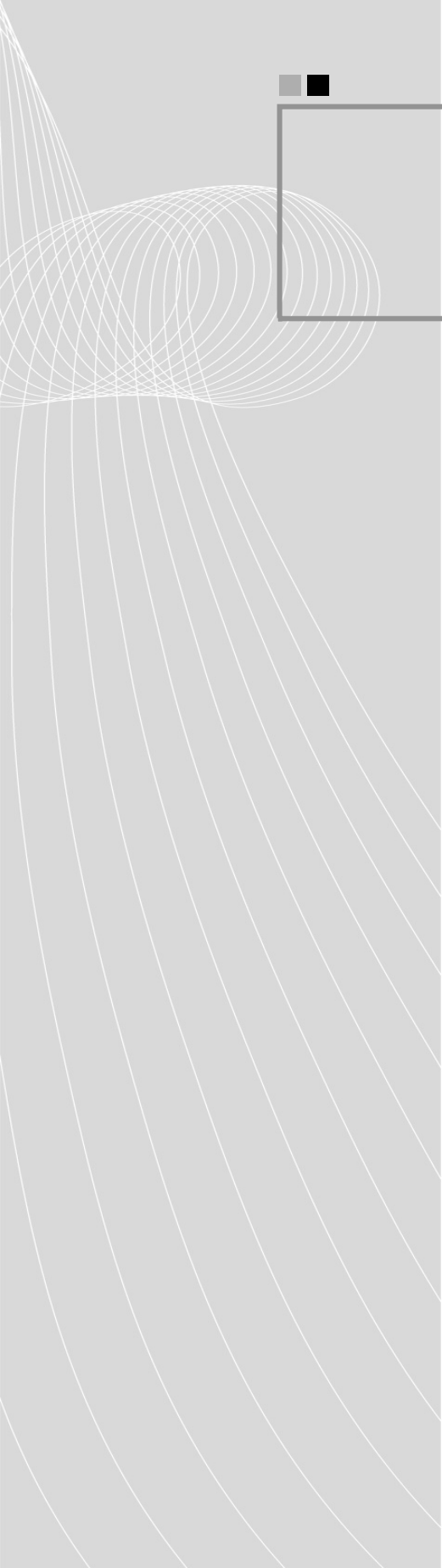
○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리허설 및 실시

- '기자회견 사전점검표'에 따라 기자회견 일정 등을 점검
- 대변인은 '언론발표시 요령과 원칙'을 점검
-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기자단의 예상 질문 및 답변서(Q&A)를 미리 작성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
 -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
 - 금번 사고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정도
 - 상황 복구 소요기간 및 비용
 -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 갈등관리 언론대응지침의 공유
 - “농림수산물식품부 갈등관리 언론대응 행동지침”과 1차 언론브리핑 준비 시 결정한 언론보도 지침을 사전에 공유
 - 우리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 「GMO 안전관리」 코너를 개설하고 직원들에게 전파
 - 필요시 상황진행 단계별로 대언론 행동지침 시달
- 직원 교육
 - 갈등대응 홍보팀은 우리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 언론대응 매뉴얼’을 교육
-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수립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갈등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가

나

[첨부 1]

1. GMO 관련 관계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연 락 처	비 고
대통령비서실(국가위기상황센터)	02-770-7890~5	
국무총리실		
- 농수산국토정책관	02-2100-2346	
	02-2100-2347	
	02-2100-2352	
- 사회문화정책관	02-2100-2209	
	02-2100-2213	
농림수산식품부		
- 표시검역과	02-500-2122	
- 홍보담당관실	02-500-2160	
- 식량정책과	02-500-1978	
- 축산경영과	02-500-2070	
- 양자협상협력과	02-500-187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관리과)	031-463-1595	
국립식물검역원(위험평가과)	031-420-7647	
국립종자원(종자유통과)	031-467-014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의생명공학과)	031-467-1864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031-299-1937	
국립농업과학원(생물안전성과)	031-299-1161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79	
국립수산과학원(생명공학연구소)	051-720-246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품질관리과)	031-976-3024	
외교통상부(경제기구환경과)	02-2100-7732	
지식경제부(바이오나노과)	02-2110-5666	
교육과학기술부(연구환경안전팀)	02-2100-6889	
보건복지가족부(생명윤리안전과)	02-2073-7612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55	
국토해양부(해양생태과)	02-505-5906	
식품의약품안전청(신소재식품과)	02-380-1332	
질병관리본부(생물안전평가과)	02-380-2967	
국립환경과학원(바이오안전연구과)	032-560-7484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정책팀)	042-879-8303	
(사)한국사료협회	02-581-5732	
(사)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주)농협사료	02-2224-8542	

[첨부 2]

2. GMO 관련 전문가 연락처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이훈택	02-450-3675	연구개발(동물)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김진희	02-450-3687	연구개발(동물)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박광욱	061-750-3236	연구개발(동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창규	02-880-4805	연구개발(동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재용	02-880-4810	연구개발(동물)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김동수	051-629-5914	연구개발(어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남윤권	051-629-5918	연구개발(어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석	051-890-6462	연구개발(곤충)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연수	062-530-2072	연구개발(곤충)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김은기	032-860-7514	연구개발(미생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병현	055-751-5418	연구개발(식물)
서울대학교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최양도	02-880-4941	연구개발(작물)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부	김주곤	031-330-6197	연구개발(작물)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부	최상봉	031-330-6199	연구개발(작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김선형	02-2210-5728	연구개발(식물)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류기현	02-970-5618	연구개발(식물)
진주산업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이신우	055-751-3227	연구개발(식물)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이효연	064-754-3347	연구개발(잔디)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김해영	031-201-2660	식품산업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이철호	02-3290-3414	식품산업
세종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경규황	02-3408-3225	식품산업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임성렬	033-248-2113	식품산업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	진현정	031-670-3045	식품산업(효과분석)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신효중	033-250-8667	농업경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권오상	02-880-4728	농업경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관수	02-880-4727	농업경제
부산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박성훈	051-510-2395	바이오화학산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진호	02-880-4855	바이오에너지산업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부	진용수	031-290-7808	바이오에너지산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협	02-880-2604	통상관련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최승환	02-961-0742	국제법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063-850-6462	국제법, NGO활동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02-820-5449	국제법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송해룡	02-760-0401	커뮤니케이션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비 고
동아제약연구소 바이오텍연구부	나규홍	031-280-0046	연구개발(동물)
랩서비스코리아	김훈택	042-533-1592	연구개발(동물)
(주)마이크로프렌즈	김재훈	063-211-6004	연구개발(식물)
(주)농우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	한지학	031-883-7805	연구개발(작물)
넥스젠	유제근	011-457-4383	연구개발(유용물질)
(주)롯데	김창호	02-501-3934	연구개발(미생물)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	박영민	02-2081-2570	민간검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권순중	031-299-1120	평가(작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김동현	031-299-1753	평가(작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박홍재	031-299-1724	평가(작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류태훈	031-299-1142	평가(작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이근표	031-299-1161	평가(작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노은운	031-290-1161	연구개발(나무)
국립수산과학원 생물산업부	김봉석	051-720-2461	연구개발(어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	박용하	02-380-7631	평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	방상원	02-380-7689	평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인프라사업부	김환목	043-240-6500	평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동광	02-723-4255	과학저널리스트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명진	02-723-4255	시민단체
(사)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02-739-5441	소비자단체
(사)소비자시민모임	진정란	02-735-6525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02-3460-3291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02-795-1042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02-3272-7102	소비자단체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02-737-7921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2-735-7000	환경단체
듀폰 바이오테크놀로지	차 진	02-2222-5310	다국적기업
몬산토코리아(주)	노민정	02-3393-3761	다국적기업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신세영	02-3490-0716	다국적기업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이사미	02-3450-1300	다국적기업
신젠타종묘	박희영	02-3985-660	다국적기업

3. GMO 안전관리 관련 부처별 기본역할

관련부처	기본역할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LMO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 국내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LMO위해성평가 시험 수행 - LMO 개발·실험 관련 정보의 종합 수집 및 관리 -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성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용 LMO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농림수산물용 LMO 수출입 승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기초 연구 지원, 정보의 종합 수집 및 관리 - LMO가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해성 심사 협의 - 농림수산물용 LMO의 안전성 홍보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용 LMO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LMO 수출입 승인에 관한 인체위해성 심사 및 관리,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기초연구 지원 - 인체위해성 LMO 및 고위험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LMO 인체위해성 및 보건의료용 LMO 정보의 종합 수집 및 관리 - LMO의 인체안전성 홍보
지식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O 관리 총괄업무 -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산업용 LMO 수출입 승인에 관한 위해성 심사,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기초연구 지원 - LMO의 종합정보 및 산업용 LMO 정보 종합 수집 관리 - LMO 안전에 관한 총괄적 홍보 및 산업용 LMO의 안전성 홍보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용 LMO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해성 심사 협의 - 해양용 LMO 수출입 승인에 관한 위해성 심사,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정보의 종합 수집 및 관리 - 해양용 LMO의 안전성 홍보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해성 심사 협의 - 환경정화용 LMO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환경정화용 LMO 수출입 승인에 관한 위해성 심사, 평가기준 및 지침 마련,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지원, 정보의 종합 수집 및 관리 - 환경정화용 LMO의 안전성 홍보

4. 초기 상황보고 서식(내부보고용)

○○○ 관련 보고

〈 사건 개요 〉

◦ '00.00.00일 00소재 00사건 원인, 피해상황 등을 간략히 기재

1. 00년 00월 00일 현재 추진실적

○ 조치(복구) 사항 등을 기재

※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2.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회의 개최시 결과보고서를 첨부

3. 향후계획

○ 복구 완료 시 까지의 추진계획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 기재

수신부서명	
-------	--

붙임 : 참고자료(사고주변 지도) 등

[첨부 7]

7. 상황 보고서

- 수신 : 농림수산식품부 ○○○○과(팀)
- 발신 : 기관명 ○○○○과(팀)
- 일시 : 년 월 일 시
- 담당자 : 직위 성명
- 연락처 : Tel , Fax
-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명		
발생 및 진행상황		
조치내용		
관련동향		
건의사항 기 타		

8.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Checklist

Communication Risks Analysis Work Sheet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분석표

① 일 자	
② 정 책 명	
③ 담 당 부 서	
④ 정 책 목 표	
⑤ 추 진 기 간	
⑥ 정책 주요내용	
⑦ 쟁 점 사 항	

단 계	타깃 오디언스	이슈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최악의 시나리오
사건진행				
언론보도				
대국민여론 조사결과				
정부대책 발표 및 집행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				

9.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1.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2.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3.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4.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 둔다.
5.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6. 직원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7.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8.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9.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10. 예상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11. 행사전에 모든 음향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12.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13.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14.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15.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규칙을 설명한다.
16. 질문과 대답을 주의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17.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18.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10.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헤드라인 내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러므로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마라.
-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예상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포(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 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11. GMO 표시 관련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①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3조(표시기준) ①영 제26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으로 표시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표시방법)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세부 표시
방법은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나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
한다.

1.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포장재에 직접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가. 풋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되,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로써 판매장소에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狀)에
표시할 수 있다.

나. 글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사료공정서》

[별표 8]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6조 관련)

1. 용기 및 포장의 표시 사항

3) 유전자변형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
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②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 식품의 분류는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 중 콩 통·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 통·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류 중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 중 두유류
11.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12. 특수용도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13.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4. 특수용도식품 중 기타 영·유아식
15.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16.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특수용도식품 중 입산·수유부용식품
18. 장류 중 메주
19. 장류 중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20. 장류 중 고추장, 조미고추장
21. 장류 중 청국장
22. 장류 중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기타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전분
25.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는 당해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다.